



차림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줌마', '이모' 대신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기분좋은 이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함께 지은 이름

식당노동자에게 '차림사'님이라고 불러요.

'차림사'

식당노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에서 일상 속의 여성운동을
바로,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우)121-847 서울시마포구월드컵로26길39(성산동)시민공간나루3층

Tel.02-737-5763 Fax.02-736-5766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womenlink1987.tistory.com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전화상담 02-706-5050 이메일상담 eq5050@womenlink.or.kr 트위터 @equallabor

퍼넌곳 한국여성민우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그림 : 조진옥, 나리맛탕 디자인·제작 : 우림광고기획
변화의 시작은 자립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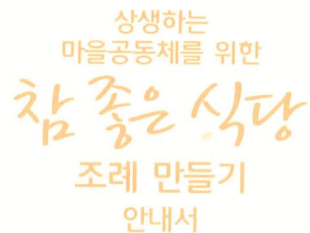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안내서



한국여성민우회



$\frac{2}{3}$ 님기! 순서

심광노동자 이야기 - 2

「한 줄은 신당」 조례 17장 - 6

「 $\frac{1}{2} \frac{1}{2} \frac{1}{2}$ 」 조려해 $\frac{1}{2} \frac{1}{2} \frac{1}{2}$ - 8

「차츰 작은 싹들」 지원방안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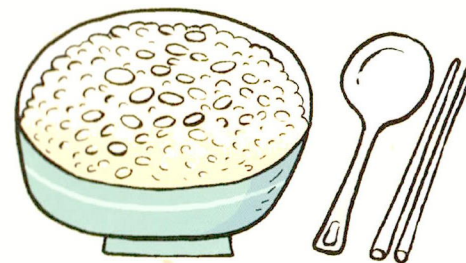
「참조 을 사랑」 조례안 전문 - 10

「 $\frac{1}{2}$ 조은 신당」 지정신사세월 $\frac{1}{1}$ 기조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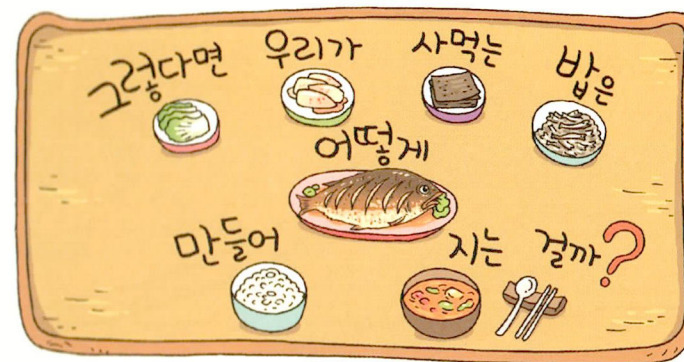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FAQ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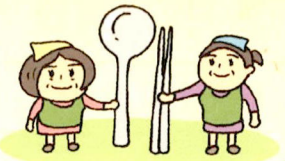
우리 동네 「잡초의 사랑」, 이걸 봐만 $\frac{\pi}{2}$ 이거! - 17

누구나 밥을 먹는다



2010년 기준 한국인 전체 음식 소비량에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인구의 절반은 밤을 새워먹고 있다.





식당노동자 이야기 1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11시

오후 7시



4대 보험도 안넣는데 무슨 퇴직금이라도 사장이 챙겨주면 다행이지.

그만둘 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구만

옆에 편의점 가서 담배도 좀 사다줘.

휴~ 이제야 한번 앉아보네.

아이고~ 허리야.

아~ 배고파

여기 식사 되죠?

우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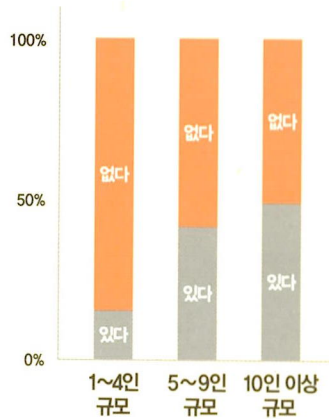
식당노동자 이야기 2

아래 통계는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진행한 식당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당노동자의 2/3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들 중 80%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절반 이상의 식당여성노동자들이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노동시간, 너무 적은 임금

식당노동자 월급은 150만원 안팎. 평균 1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의 결과입니다. 시간당 급여를 계산해 본 결과 최저임금을 밑돕니다.

전일제 식당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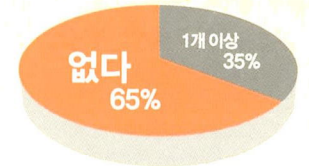
5인이상 사업장
1일 12시간 근무
월급여 145만원
월 3.7일 휴무
시간당 3,414원

5인미만 사업장
1일 12시간 근무
월급여 139만원
월 3일 휴무
시간당 3,82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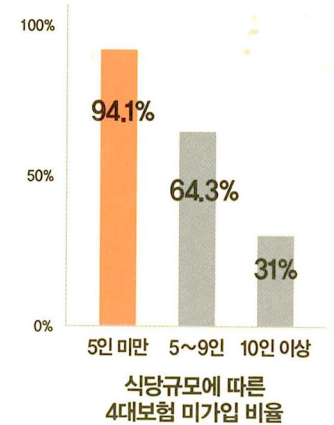


4대보험? 처음 들어봐요.

식당노동자의 2/3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주 부담을 이유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임금 탓에 식당노동자 개인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10인사업장 미만, 월125만 원 이하의 노동자에 한해 4대 보험 부담금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지만 범위는 너무 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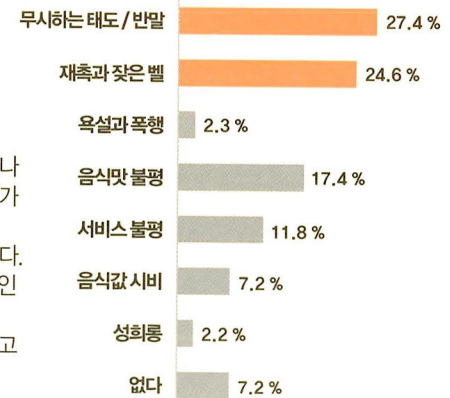


4대 보험 가입 여부



손님한테 무시당할때 제일 힘들어요.

식당여성노동자의 27.4%가 손님에게서 '무시하는 태도나 반말'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밥 짓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일하기 때문에 식당노동은 더욱 평가절하됩니다. 여성이 하는 일은 가사노동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목적

음식점의 난립, 열악한 일자리, 낮아지는 음식의 질, 잦은 휴폐업. 모두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현재 구조는 식당 영업자의 안정적 소득, 노동자의 인권, 양질의 먹거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생'의 원리로 새로운 변화를 만듭시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모두 지역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식당은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지역 차원의 정책과 조례'를 상상하였습니다.



식당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식당!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당!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조례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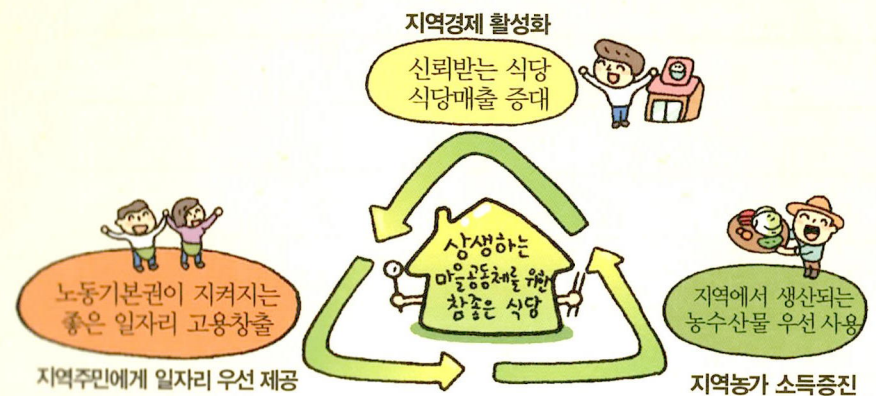
「참 좋은 식당」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지역 내에서 「참 좋은 식당」을 선정합니다.

「참 좋은 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지역의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좋은 일터를 만드는 흐름에 동참하는 음식점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연스레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바뀝니다.

좋은 일터와 건강한 먹거리,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지역사회에서 공인받은 식당은 입소문을 탑니다. 잦은 휴업과 폐업으로 불안정한 음식점 운영은 지속가능성이 확대 됩니다.

「참 좋은 식당」조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참 좋은 식당」조례는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식당!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가 실현되는 식당!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핵심 내용

「참 좋은 식당」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참 좋은 식당」을 지정, 육성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 고용환경 개선, 종사자 권익 보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촉진합니다.
- 「참 좋은 식당」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 「참 좋은 식당」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

- 식당 영업자, 종사자, 지역 주민, 노동·인권·환경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위원회가 「참 좋은 식당」 지정과 육성·지원, 관련 시책 등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참 좋은 식당」이 되려면?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영업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역주민과 위원회 위원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심사 세부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위원회가 지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지정 기준

- 노동친화 : 양질의 일자리
- 환경친화 : 건강한 먹거리
- 상호존중 환경 : 종사자·이용자 편의 제공
- 지역친화 항목에 추가점수를 부여
- 각 항목별 점수 및 총점을 따져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합니다.

'상생'의 원리로
변화를 만들어요~



지원 내용

-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종사자 복리후생 증진 및 교육 비용, 업소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영업자 경영자금이나 매출 증대 수단을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관리·감독합니다.
- 연 1회 지정하며, 지정은 2년간 유효합니다.
- 해당 업소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종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실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노동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합니다.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방안

좋은 일터, 즐거운 일터를 위한 식당노동자 복리후생과 교육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더하여 추가 지원
예) 건강보험료 지원,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 부담금의 반액 지원 등
-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식당을 만들기 위한 업소 환경 개선 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구입 및 설치비 보조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 지원: 음식물쓰레기 순환 재활용을 위한 설비 지원 등
- 전기료 절감을 위한 LED 조명 지원
- 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식기 구입 지원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한 영업자 경영 지원

-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의 우선 대상으로 함.
- 대출 이자 감면, 신용대출 보장 등 추가 혜택 부여

「참 좋은 식당」홍보 및 매출 증대 지원

- 지자체 홈페이지, 지자체 신문,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례로 「참 좋은 식당」 지정업소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음식점 이용권(바우처) 발행 : 관공서 활용 및 저소득층 이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

기타 지원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안 전문

〇〇시 〇〇구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〇〇시 〇〇구(이하 "〇〇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 좋은 식당"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를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법 제3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자"란 법 제37조 및 영 제25조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제3호의 영업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5. "노동 관련 법규"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업자와 종사자,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음식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음식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참 좋은 식당」 운영 관련 영업자·종사자 교육
3. 구내 음식점 고용 현황 및 종사자 취업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음식점 고용환경 개선과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연구·개발

③ 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정부와 서울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영업자와 종사자의 의무) ① 영업자는 종사자, 소비자와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와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참 좋은 식당」 지정 과정 및 운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참 좋은 식당」 추천 및 지정에 관한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참 좋은 식당」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〇〇시 〇〇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 좋은 식당」의 지정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 좋은 식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재심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참 좋은 식당」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홍보, 조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참 좋은 식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진흥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등의 부서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음식점 영업자·종사자: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2.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근로자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3. 그 밖에 노동·인권·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음식점 종사자, 주민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1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참 좋은 식당」 지원·육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육성

제15조(지정대상)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제16조(지정시기 및 기간)

「참 좋은 식당」은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기간은 지정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지정기준 등)

- ①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기준을 적합 수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한다.
 1. 노동친화적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2. 환경친화적 음식점 운영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3. 영업자·종사자·소비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각종 편의 제공
- ②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지정절차 등)

- 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 다수의 추천이나 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경우 영업자의 동의를 득한 후 지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지정심사 세부기준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자체평가 결과 적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심사를 위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참 좋은 식당」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심사표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과 위원회는 2항에 따른 자체평가 및 3항에 따른 현지 조사 시 해당 업소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곳이 재신청한 경우 위원회 현지 조사는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한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지정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

- 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표지판 교부
 2.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추천 등 영업자 경영 지원
 3.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4. 종사자 사회보험료 등 복리후생 지원
 5. 영업자·종사자 교육 비용 지원
 6. 음식점 이용권 발행 및 취약계층 지원
 7. 홍보책자 발간, 구 홈페이지·구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8.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참 좋은 식당」 사후관리 등

제20조(사후관리)

- ① 구청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는 해당 업소 종사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

- ① 구청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 한 경우
 5.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정증과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령 통과와의 관계)

「참 좋은 식당」육성·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서식〉

1. 「참 좋은 식당」 지정신청서
2. 「참 좋은 식당」 지정심사 세부 기준
3. 「참 좋은 식당」 심사표
4. 「참 좋은 식당」 지정증
5. 「참 좋은 식당」 지정 표지판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대분류	소분류	세부기준
1 양질의 일자리 (노동친화) 40점	기본사항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 시영업자-종사자 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보관
	기본사항	퇴직금 지급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본사항	최저임금 준수 ·해당 연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
	노동조건	사회보험 가입과 적용 ·4대 보험 전체 가입, 부분 가입, 가입 안함.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재해시 산재보험 처리 여부
	노동조건	휴일 · 휴가 및 휴게시간 보장 ·법정 기준에 따른 주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 및 휴게시간 보장. 법정 공휴일 휴무, 그 외 경조사휴가, 하계휴가 등 재량 휴가 보장 정도
	노동조건	적정 임금 및 수당 지급 ·법정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지급, 그 외 휴가비, 경조비, 상여금 등 법정외 급여 지급 정도
	노동조건	기타 복리후생 제도 실시 ·유급 교육시간 제공, 통근비용, 자녀학자금 지원, 기타 문화활동 지원 등
2 건강한 먹거리 (환경친화) 30점	환경친화	친환경 제품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 자제 ·일회용 식기, 종이컵 사용 최소화, 친환경적 주방세제 사용 및 소독 실시, 화학합성제품의 식기 사용 자제 등
	환경친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노력 ·간소한 상차림, 적정량의 음식 제공, 남은 음식 싸주기 시행 등

대분류	소분류	세부기준
2 건강한 먹거리 30점	건강 먹거리	우수한 농산물 식자재 확보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사용 정도(각 재료별 등급기준 적용),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여부
	건강 먹거리	적정 조미료 사용 ·화학조미료 사용 최소화, 천연조미료 등 안전한 첨가물 사용 여부
	건강 먹거리	식자재 관리 보관 시설 및 보관 방침 적정성 ·적절한 포장 및 라벨 관리, 정리정돈 상태, 검사자 지정여부
3 상호존중 문화 조성 (편의 제공) 30점	상호존중	업소 내 성희롱 예방 조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고지문 부착 여부, 그 외 일상적인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상호존중	종사자, 고객과의 상호존중 및 의견 수렴 ·영업 방침에 대한 종사자 의견 반영, 고객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여부, 종사자 이름표 착용 등
	종사자 편의	영업 개시 및 마감 준비시간 운영 ·종사자 노동시간 준수 및 고객 편의를 위한 영업 개시/마감 준비시간 고지 및 준수 정도
	종사자 편의	종사자 안전 보호 및 편의시설 설치 ·종사자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기자재 확보 정도, 탈의실이나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이용자 편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의무업소 제외), 수유실 · 놀이방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분리된 흡연시설 설치 여부 등
부가점수 각 3점	지역 친화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사회 공헌 활동(먹거리 나눔, 자원봉사, 사회단체기부 등)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연계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FAQ



「참 좋은 식당」이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역 내 음식점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점진적인 노동 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동권 감독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식당은 「참 좋은 식당」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소규모 식당이라 할 지라도 법정 기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며
영업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참 좋은 식당」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죠?

「참 좋은 식당」은 식당노동자의 노동조건, 친환경적인 식재료,
상호존중 환경 등을 따지며 주민들의 참여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모범음식점제도는 위생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사후 관리 역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조례제정이 필요한가요?

지역의 정책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조례 제정은 정책을 구현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우리 동네 참 좋은 식당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내가 동네 주민이라면?

- 지역 내 식당노동자들과 대화의 장을 시도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참 좋은 식당」조례를 알리고 제안합니다.

내가 지방자치단체 의원/공무원/단체장이라면?

-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 음식점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참 좋은 식당」조례제정을 추진합니다.



「참 좋은 식당」조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을 찾아주세요!

02-737-5763 / equallove@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는 중장년 여성들이 음식점 노동에 종사하는 것에 주목하여
2010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 캠페인 및 토론회
2010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길잡이 발간
2011년 식당여성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2011년 식당노동자 호칭공모 및 차림사 호칭 발굴
2012년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개발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동네 「참 좋은 식당」, 함께 만듭시다!